[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3.3.2., 2024.3.8., 2025.5.2., 2026.10.19.>

국외여행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1. 단기 국외 여행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병역준비역 중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이하 별표 1에서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라 한다) 나목에 따라 허가한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1) 1회에 1개월 이내. 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통틀어 2년 이내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연장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1회에 1개월 범위(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 ·업체 배치 전에 있는

※ '단기국외여행'이란 관광, 친지방문 등 1개월 이내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외여행 목 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추천서 제출 생략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다) 비행기표, 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2. 유학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1) 영 제124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별 제한연령(이하 별표1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이라 한다)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2)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나) 재외공관장의 재학(입학)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다)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라)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마)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가목 허가대상인 경우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바)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여행 목 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3)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상급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가) 졸업(졸업 예정)증명서 나)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예술·체육요원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3개월까지 다만,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가목의 구비서류와 같음
3. 연수, 훈련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학 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 하려는 경우 2) 고용관계가 있는 취업 형태의 훈련(OPT, 의사수련과정 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만, 연수·훈련이 '국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6호에 따라 허가	1) 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2) 1)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의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통틀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가)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나)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별지 제13호서식]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다)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라)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4. 농업·해양 및 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농업, 해양 및 수산계 학교 재학자 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가) 학교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5. 선원이나 승무원 선박 및 항공기 탑승	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음
	다.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음
6. 국외취업	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가) 업체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7.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가. 전문연구요원(법 37조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5개월 이내)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출장명령서, 공문, 계획서, 계약서 등 출장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목적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 나) 출장명령서, 공문, 출장계획서 등 출장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8. 예술 및 체육 활동	예술·체육요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9. 범죄인에 대한 조치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국외 수용시설 수감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소일까지	가) 재외공관장을 통해 확인된 수감사실 확인 서류
10. 기 타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되, 병역이행일자 연기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기사유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개월 범위	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인의 사유서 다)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